

구민의 작은 목소리에도

귀 기울이는 금천구의회

복지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
2025. 6. 23.(월) 10:00

제255회 금천구의회 정례회 심사안건 검 토 보 고 서

서울특별시 금천구 전기자동차
전용주차구역의 화재예방 및 안전시설
지원에 관한 조례안
(문화환경국 환경과 소관)



복 지 건 설 위 원 회
전문위원 추병수

서울특별시 금천구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

1. 제안경위

- 가. 의안번호 : 제2704호
- 나. 제 출 자 : 금천구청장
- 다. 제출일자 : 2025. 5. 29.
- 라. 회부일자 : 2025. 5. 29.

2. 제안이유

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에서 발생 가능한 화재로부터 구민의 안전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전기자동차 화재예방 및 안전시설 설치·지원 기준을 마련하고자 함.

3. 주요내용

- 가. 목적 및 정의(안 제1조 및 제2조)
- 나. 구청장의 책무(안 제3조)
- 다. 다른 조례와의 관계(안 제4조)
- 라. 안전시설의 설치 및 지원(안 제5조)
- 마. 관계인에 대한 권고(안 제6조)
- 바. 협력체계 구축(안 제7조)
- 사. 사무의 위탁(안 제8조)

4. 참고사항

- 가. 관계법령 : 「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」 제11조의2,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의7
- 나. 예산조치: 필요시 반영

5. 검토의견

가. 제정 이유

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에서 발생할 수 있는 화재로부터 주민의 안전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

나. 주요 내용

1) 목적 및 정의(안 제1조 및 제2조)

- 안 제1조는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예방을 위한 안전시설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주민의 안전과 재산을 보호하는 것을 본 조례의 목적으로 하고 있음.
- 안 제2조는 전기자동차, 충전시설, 전용주차구역, 안전시설, 관계인에 대한 용어의 정의를 규정하고 있음.

2) 구청장의 책무(안 제3조)

- 전용주차구역에서 발생 가능한 화재로부터 주민의 안전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하도록 하는 책무를 부여하고 있음.

3) 다른 조례와의 관계(안 제4조)

4) 안전시설의 설치 및 지원(안 제5조)

- 구청장에게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관계인이 화재예방을 위하여 안전시설을 설치하려는 경우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함.
- 이는 관계인이 안전시설을 설치할 경우의 비용적인 문제를 일부 해소시켜 보다 적극적인 설치유도를 이끌어 내는 한편, 전용주차구역별 통일성 있는 안전시설 확보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봄

5) 관계인에 대한 권고(안 제6조)

-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효과적인 화재 예방 및 대응을 위해 구청장이 관계인에게 권고할 수 있는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.

6) 협력체계 구축(안 제7조)

7) 사무의 위탁(안 제8조)

다. 검토의견

- 최근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촉진을 위해 전기차 및 충전시설 확충정책을 시행하고 있으나 계속되는 전기차 화재 발생 등에 따라 전기차 안전성에 대한 주민 불안과 우려가 증폭되고 있음.
- 이에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의 안전 및 화재 사고 예방과 대응을 위한 시설 설치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여 주민의 생명을 보호하고 안전한 환경친화적 자동차 이용 환경을 조성하고자 본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조례 제정은 법령의 범위에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.

관계법령

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(약칭: 친환경자동차법)

[시행 2022. 1. 28.] [법률 제18323호, 2021. 7. 27., 일부개정]

제11조의2(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전용주차구역 등)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소유자(해당 시설에 대한 관리의무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관리자를 말한다)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대상시설에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 및 전용주차구역을 설치하여야 한다. <개정 2021. 7. 27.>

1.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
2. 공동주택
3. 특별시장·광역시장, 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, 특별자치시장, 시장·군수 또는 구청장이 설치한 주차장
4. 그 밖에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을 위하여 설치할 필요가 있는 건물·시설 및 그 부대시설

② 제1항에 따른 전용주차구역을 설치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해당 전용주차구역에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을 갖추어야 한다. <신설 2021. 7. 27.>

③ 시·도지사는 「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」 제2조제3호에 따른 혁신도시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접지역에 수소충전소를 1기 이상 설치하여야 한다. <신설 2021. 7. 27.>

④ 제3항에 따라 설치하는 수소충전소의 종류 및 규격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 <신설 2021. 7. 27.>

⑤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설치하여야 하는 전용주차구역의 규모와 충전시설의 종류 및 설치수량 등은 대상시설의 규모, 용도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 <개정 2021. 7. 27.>

⑥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민간의 전용주차구역 및 충전시설 설치 부담을 덜고 그 설치를 촉진하기 위하여 금융 지원과 기술 지원 등 필요한 조치를 마련할 수 있다. <개정 2021. 7. 27.>

⑦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동차를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의 충전구역에 주차하여서는 아니 된다. <신설 2018. 3. 20., 2021. 7. 27.>

1. 전기자동차
2. 외부 전기 공급원으로부터 충전되는 전기에너지로 구동 가능한 하이브리드자동차

⑧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동차를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하여서는 아니 된다. <신설 2021. 7. 27.>

1. 전기자동차
2. 하이브리드자동차
3. 수소전기자동차

⑨ 누구든지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 및 충전구역에 물건을 쌓거나 그 통행로를 가로막는 등 충전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. 이 경우 충전 방해행위의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 <신설 2018. 3. 20., 2021. 7. 27.>

⑩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교통, 환경 또는 에너지 관련 공무원 등 소속 공무원에게 제7항 및 제8항을 위반하여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의 충전구역 및 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하고 있는 자동차를 단속하게 할 수 있다. <신설 2018. 3. 20., 2021. 7. 27.>

⑪ 국가, 지방자치단체, 공공기관, 지방공기업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의 장은 소관 업무의 수행 또는 보안 등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해당 기관이 구축·운영하는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을 개방하고, 개방하는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의 위치, 개방시간 및 이용조건 등의 정보를 공개하여야 한다. <신설 2021. 7. 27.>

⑫ 제11항에 따른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의 개방 및 정보공개의 범위와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 <신설 2021. 7. 27.>

[본조신설 2016. 1. 27.]

[제목개정 2021. 7. 27.]

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

(약칭: 친환경자동차법 시행령)

[시행 2024. 7. 10.] [대통령령 제34657호, 2024. 7. 2., 타법개정]

제18조의7(충전시설의 종류 및 수량 등) ① 법 제11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은 충전기에 연결된 케이블로 전류를 공급하여 전기자동차 또는 외부충전식하이브리드자동차(외부 전기 공급원으로부터 충전되는 전기에너지로 구동 가능한 하이브리드자동차를 말한다. 이하 같다)의 구동충전지를 충전하는 시설로서 구조 및 성능이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적합한 시설이어야 하며, 그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급속충전시설: 충전기의 최대 출력값이 40킬로와트 이상인 시설
2. 완속충전시설: 충전기의 최대 출력값이 40킬로와트 미만인 시설

② 법 제11조의2제2항에 따라 설치해야 하는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의 수는 해당 시설의 총주차대수의 100분의 5 이상의 범위에서 시·도의 조례로 정한다. 다만, 기축시설의 경우에는 해당 시설의 총주차대수의 100분의 2 이상의 범위에서 시·도의 조례로 정한다.

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18조의6제2항에 따라 전용주차구역을 설치하지 않은 경우에는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을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.

④ 제2항에 따라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의 설치 수를 산정할 때 소수점 이하는 반올림하여 계산한다.

⑤ 제2항에 따라 설치하는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의 종류 등 충전시설의 설치에 관한 세부사항은 전기자동차 및 외부충전식하이브리드자동차의 보급현황·보급계획·운행현황 및 도로여건 등을 고려하여 시·도의 조례로 정한다.

⑥ 법 제11조의2제3항에서 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접지역”이란 「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」에 따른 혁신도시의 경계로부터 5킬로미터 이내의 지역을 말한다.

⑦ 법 제11조의2제3항에 따라 설치하는 수소충전소는 수소전기자동차에 수소를 시간당 25킬로그램 이상 충전할 수 있는 시설이어야 한다.

[전문개정 2022. 1. 25.]

[제18조의5에서 이동, 종전 제18조의7은 제18조의10으로 이동 <2022. 1. 25.>]